

1-9-1

지방세 감면 등 자금·세제 지원책 마련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이행도					
	임기내	임기후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지속	완료	이행후 계유진	정착진	알부진	보류	폐기
	○				○		○		○				
추진부서	세정담당관실 (과장) 이승철 (담당) 박선태 (담당자) 유정임 ☎ 613-2522												

□ 사업개요

- 일자리창출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일자리 우수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우리지역 기업경영 활동 지원을 위한 납세 편의 제공
 - 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재정현황 : 비예산

□ 확인지표 및 이행실적

확인지표	구분	총실적/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이후
지방세감 면액	실적	186억원	61억원	57억원	68억원			
	목표	125억원	25억원	25억원	25억원	25억원	25억원	
세무조사 유예	실적	549개	183개	166개	200개			
	목표	500개	100개	100개	100개	100개	100개	
종합 이행율	실적	129.3%	40%	82%	129.3	-	-	
	목표	(100%)	(20%)	(40%)	(60%)	(80%)	(100%)	

□ 지금까지 추진사항

<2018년도>

-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61억원
 - 산업단지 입주기업 43억원, 창업중소기업 12억원, 일자리우수기업 6억원
- 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183개 업체
 - 일자리우수기업 97, 우수중소기업인 15, 명품강소기업 71
-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 감면기한 3년 연장

<2019년도>

-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57억원
 - 산업단지 입주기업 38억원, 창업·벤처중소기업 17억원, 일자리우수기업 2억원
- 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166개 업체
 - 일자리우수기업 80, 우수중소기업인 15, 명품강소기업 7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 개정 : 감면기한 3년 연장

<2020년도>

-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68억원
 - 창업·벤처중소기업 7억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61억원
- 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200개 업체
 - 일자리우수기업 74, 우수중소기업인 12, 명품강소기업 107, 광주형일자리인증기업 7

공약 입법(조례) 추진 현황

조례명	발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비고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 일자리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	○	○	2018년 개정 2019년 시행

향후계획

-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지속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창업) 감면 연장 건의